[첨부]

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

□ **관련근거 :**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

□ **사회적기업 :**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 7조에 따라 인증받은자

□ **적용대상 :** 국가기관, 지자체, 공기업 등

□ **2020년도 실적**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2020년
한국석유공사	사회적기업	934